

(12) 지방세 지출보고서

I.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

1. 비과세·감면 총괄표

(단위: 원, %)

구 분		'21년(결산)
비과세·감면액(A)		47,189,757,975
	비과세	28,734,193,542
	감면	18,455,564,433
지방세 징수액(B)		234,522,757,810
비과세·감면율(A/A+B)		16.8

2.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1년(결산)	비중
총 계		47,189,757,975	100
1	일반공공행정	21,481,080,308	45.52
2	공공질서 및 안전	426,991,533	0.90
3	교육	4,226,366,116	8.96
4	문화 및 관광	3,482,100,547	7.38
5	환경보호	57,486,952	0.152
6	사회복지	7,242,999,686	15.35
7	보건		
8	농림해양수산	12,815,969	0.03
9	산업·중소기업	39,038,189	0.08
10	수송 및 교통	1,172,946,679	2.49
11	국토 및 지역개발	1,542,125,822	3.27
12	과학기술	-	
13	국가	4,908,977,482	10.40
14	외국	38,400	0.00
15	기타	2,596,790,292	5.50

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원, %)

분 야		'21년(결산)	비중
총 계		47,189,757,975	100
	보통세	46,653,821,150	99
	취득세	11,744,960,540	25
	등록면허세	154,498,650	0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2,165,046,028	5
	재산세	31,784,609,941	67
	자동차세	804,705,991	2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535,936,825	1
	지역자원시설세	535,936,825	1
	지방교육세		

4.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

(단위: 원)

감 면 유 형	'20년(결산)	'21년(결산)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18,061,738,389	19,860,484,020	1,798,745,63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97,224,930	81,891,660	-15,333,270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14,353,743	107,675,111	93,321,368
사유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에 대한 비과세	1,262,860,597	1,271,913,877	9,053,280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86,506,410	159,115,640	72,609,230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43,192,513	426,991,533	283,799,020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3,875,722,133	4,136,928,356	261,206,223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84,914,584	89,437,760	4,523,176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2,942,036,736	3,473,788,578	531,751,842
신문,통신사업에 대한 감면	1,009,200	0	-1,009,200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7,374,346	8,311,969	-9,062,377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3,750	57,486,952	57,483,202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322,000	0	-322,000
장애인에 대한 감면	816,642,950	755,792,363	-60,850,587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316,904,274	309,885,269	-7,019,00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15,119,824	17,764,324	2,644,50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6,707,295	184,171,409	-22,535,886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40,501,500	6,374,860	-34,126,64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666,288,813	4,994,732,464	328,443,65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139,557,597	128,275,990	-11,281,607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367,541,800	727,734,500	360,192,700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과세	128,840,904	118,268,227	-10,572,677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280	280	0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5,191,423	0	-25,191,423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200,000	0	-1,200,000
산림유전자원보호령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2,984,189	1,247,255	-1,736,934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2,385,000	1,776,000	-609,000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98,243,582	8,471,309	-89,772,273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1,288,224	1,321,405	33,181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0	5,669,430	5,669,430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43,459,210	0	-43,459,210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22,349	128,561	6,212
법인,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40,200	0	-40,200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8,562,312	32,622,750	4,060,438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0	617,448	617,448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6,316,293	6,271,909	-44,384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335,794,430	314,746,160	-21,048,270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548,925,960	508,565,260	-40,360,700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694,847,980	343,363,350	-351,484,63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82,361,520	219,325,760	136,964,2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7,082,810	1,226,126,030	1,219,043,2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253,023,519	96,674,032	-156,349,487
국가에 대한 비과세	4,445,021,103	4,908,972,804	463,951,701
국가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42,504,370	0	-42,504,370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261,107	4,678	-256,429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48,000	38,400	-9,600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	23,695,000	14,056,000	-9,639,000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1,346,964,440	1,717,370,590	370,406,150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183,926,170	632,751,400	448,825,230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4,118,010	195,057,646	939,636
시설물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	14,246,785	14,149,276	-97,509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9,742,366	10,595,410	853,044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11,132,900	12,809,970	1,677,070

II.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

1. 일반공공행정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일반공공행정		합 계	21,481,080,308
1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자동차·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109① 1호, §145① 1호, §145②) -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수송, 청소, 오물수거와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1·2호)	소 계	19,860,484,020
		취 득 세	354,027,200
		주 민 세	693,997,336
		재 산 세	18,555,912,162
		자동차세	5,009,211
		등록면허세	3,670,000
		지역자원시설세	247,868,111
2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②)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의2①)	소 계	81,891,660
		취 득 세	81,891,660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107,675,111
		재 산 세	107,385,481
		지역자원시설세	289,630
		-	-
4	사유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비과세 - 묘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비과세(지방세법 §26② 3호) -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묘지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109③ 1호, §145②)	소 계	1,271,913,877
		재 산 세	1,268,789,987
		지역자원시설세	3,123,890
5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①②)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및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50%)(지방세특례제한법 §85의2③)	소 계	159,115,640
		취 득 세	159,115,640
		-	-

2. 공공질서 및 안전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교 육		합 계	426,991,533
6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레저·주민·재산·자동차·지방소득·담배소비·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92① 1호, §92②·③) -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지방세법 §9⑦)	소 계	426,991,533
		재 산 세	243,439,054
		자 동 차 세	183,547,389
		지역자원시설세	5,090
		-	-

3. 교육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교 육		합 계	4,226,366,116
7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1①, §41②, §41③, §41⑤) - 학교의 기숙사용 부동산 및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에 대하여 취득·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2①, §42②) -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1⑥)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대한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1⑦) -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소 계	4,136,928,356
		취 득 세	16,302,650
		주 민 세	862,258,716
		재 산 세	3,143,482,475
		지역자원시설세	114,884,515
8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①) -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세 면제, 장학법인의 장학금 지급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8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5②) -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5의2)	소 계	89,437,760
		재 산 세	89,437,760

4. 문화 및 관광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문화 및 관광		합 계	3,482,100,547
9	종교·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 종교·제사 목적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0①, §50②, §50③, §50⑤, §50⑥) - 종교재단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38④)	소 계	3,473,788,578
		취 득 세	629,831,850
		주 민 세	89,487,000
		재 산 세	2,646,482,128
		지역자원시설세	107,987,600
10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2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44조의2)	소 계	8,311,969
		재 산 세	8,311,969
		-	

5. 환경보호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환경보호		합 계	57,486,952
11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감면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48) -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53) - 제00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소 계	57,486,952
		재 산 세	57,486,952
		-	

6. 사회복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사회복지		합 계	7,242,999,686
12	장애인에 대한 감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1~3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7①) - 시각장애(4급)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자동차세 면제(조례)	소 계	755,792,363
		취 득 세	309,378,710
		자동차세	446,413,653
13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사회복지법인,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2①, §22②, §22③, §22⑤) - 사회적기업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등록면허·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22⑥)	소 계	118,268,227
		주 민 세	64,617,110
		재 산 세	49,842,907
		등록면허세	783,300
		지역자원시설세	3,024,910
14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9)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2의2①, §22의2②)	소 계	309,885,269
		취 득 세	122,466,300
		재 산 세	187,418,969
		-	
15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경로당용 부동산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0 1호) - 양로시설, 경로당 외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0 2호)	소 계	17,764,324
		취 득 세	1,540,000
		재 산 세	16,205,734
		지역자원시설세	18,590
16	권익증진을 위한 감면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2호) -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0의3 3호) - 법률구조법인·한국소비자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23①,②)	소 계	280
		재 산 세	280
		-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 계	184,171,409
		취 득 세	85,851,74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에 대한 주민세 비과세, 부동산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역자원시설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②, §29③) -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의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29④)	재 산 세	10,102,715
		자동차세	88,126,828
		지역자원시설세	90,126
		-	
18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 서민주택(40㎡이하·취득가액 1억원미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3②)	소 계	6,374,860
		취 득 세	6,374,860
19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①·②·④)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목적으로 직접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3)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목적으로 취득 소유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2①)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조의4)	소 계	4,994,732,464
		취 득 세	3,878,650,790
		재 산 세	1,116,081,674
		-	
2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대한 감면 - 대상주택의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①)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5②) -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25%) (지방세특례제한법 §35③)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6억원이하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35의2)	소 계	128,275,990
		재 산 세	796,990
		등록면허세	127,479,000
		-	
21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소 계	727,734,500
		취 득 세	727,734,5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p>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2)(폐지) -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	

7. 농림해양수산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농림해양수산		합 계	12,815,969
2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③ 2호)	소 계	1,247,255
		재 산 세	1,247,255
23	영농자금 등의 융자지원을 위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등에 융자 시 저당권설정등기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10①1~5)	소 계	1,776,000
		등록면허세	1,776,000
24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2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4①)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4③,§14④)	소 계	8,471,309
		취 득 세	2,200,220
		재 산 세	6,271,089
		-	
25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농어업관련사업에 대한 감면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①) - 농수산물공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및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15②)	소 계	1,321,405
		재 산 세	1,321,405
		-	

8. 산업·중소기업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39,038,189
26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중견기업, 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35%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4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①·②)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60% 경감(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재산세 7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46③) - 시험분석·연구용 담배, 수출상당 건본용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면제(지방세법 §54① 6·7호)	소 계	128,561
		재 산 세	128,561
		-	
27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①) -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주택 제외)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83②)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면제(조례) - (서울 자치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소 계	32,622,750
		재 산 세	32,194,840
		지역자원시설세	427,910
		-	
28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등록된 매매용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①) - 무역업자의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는 취득세 1,000분의 20을 경감, 중고자동차는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8③)	소 계	617,448
		취 득 세	613,630
		자동차세	3,818
		-	
29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세 면제,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②) - 금융기관의 기업합병·분할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2①, §57의2⑤ 1·2·4·5·6·7)	소 계	5,669,430
		취 득 세	5,669,430
		-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농협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이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①1·2·3·4호)		

9. 수송 및 교통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수송 및 교통		합 계	1,172,946,679
30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①)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②)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사 개발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63③)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63⑤)	소 계	6,271,909
		재 산 세	6,271,909
		-	
31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 경형 승용·승합·화물차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7①·②)	소 계	314,746,160
		취 득 세	314,746,160
32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90만원 이하) 및 공제(40만원초과 시 40만원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③) -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및 공제(140만원초과 140만원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④)	소 계	508,565,260
		취 득 세	508,565,260
		-	
33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70①)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75~100%)(지방세특례제한법 §70③·④)	소 계	343,363,350
		취 득 세	343,363,350
		-	

10. 국토 및 지역개발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국토 및 지역개발		합 계	1,542,125,822
34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 공익사업 등에 따라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73①)	소 계	219,325,760
		취 득 세	219,325,760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75% 경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보류지에 대하여 75% 경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85㎡이하 주택의 취득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74④) -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 50% 경감, 60제곱미터 75% 경감, 85 제곱미터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74⑤)	소 계	1,226,126,030
		취 득 세	1,226,126,030
3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84①) -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②) -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84③)	소 계	96,674,032
		재 산 세	96,674,032

11. 국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산업·중소기업		합 계	4,908,977,482
37	국가에 대한 비과세 -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비과세(지방세법 §9①, §26①, §77① 1호, §90, §109①, §145① 1호) - 국가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 환자수송·청소·오물수거와 도로공사, 우편·전파관리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지방세법 §126)	소 계	4,908,972,804
		취 득 세	286,063,100
		주 민 세	452,053,466
		재 산 세	4,121,880,473
		자 동 차 세	3,782,396
		등 록 면 허 세	1,196,000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지역자원시설세	43,997,369
38	국가가 사용하는 공용·공공용 재산에 대한 비과세 -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지방세법 §109②, §145②)	소 계	4,678
		지역자원시설세	4,678

12. 외국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기 타	합 계	38,400
39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 외국정부기관 또는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비과세(지방세법 §77① 2호)	소 계	38,400
		주 민 세	38,400

13. 기타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기 타	합 계	2,596,790,292
40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③ 1,2,3호) - 9억원이하 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9⑥)	소 계	14,056,000
		취 득 세	14,056,000
4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1가구 1주택 및 자경농민이 상속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2호)	소 계	1,717,370,590
		취 득 세	1,717,370,590
4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감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15① 3·4호)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1호)	소 계	632,751,400
		취 득 세	632,751,400
43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지방세법 §15① 6호) -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단	소 계	195,057,646
		취 득 세	100,943,710
		자동차세	75,636,936

연번	지방세지출 항목 및 근거법령	지방세지출액(단위: 원)	
		세 목	'21년(결산)
	<p>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의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분할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3④) -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66②)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2·4호) -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매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26② 4호) - 폐차된 자동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비과세(지방세법 §126 3호) -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교환받는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중전가액 상당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66①) 	등록면허세	18,477,000
		-	
44	<p>시설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한 공동시설세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137①) 	소 계	14,149,276
		지역자원시설세	14,149,276
		-	
45	<p>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협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1호, §87② 1호) - 신협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가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교육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재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87① 2호, §87② 2호) 	소 계	10,595,410
		재 산 세	10,595,410
		-	
46	<p>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의2) 	소 계	12,809,970
		주 민 세	2,594,000
		재 산 세	6,847,730
		자동차세	2,185,760
		등록면허세	1,117,350
		지역자원시설세	65,130